##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4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김준형・박상혁・이해민

김선민 · 서왕진 · 조 국

김재원 · 신장식 · 황운하

강경숙 · 권칠승 · 서영교

박지원 • 박은정 • 정춘생

차규근 • 윤후덕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 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및 국 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1.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
- 2.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 또는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③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4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			
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물		
	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u>사변이 있을 경우</u>		
<u> &lt;신 설&gt;</u>	2.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6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 또는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방산물
자나 국방과학기술의 가격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